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충청북도정(이하"道政"이라한다)에 관한 도민의 고충을 객관적으로 접수·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도정을 감시하여 비위의 시정등을 권고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서 도민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고, 힘있는 도정운영의 추진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도지사와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2. "고충"이라 함은 집행기관 및 그 소속직원이 직무상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등에 기인하여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 및 처리 지연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하에 충청북도청소리옴부즈만(이하 "청소리옴부즈만"이라 한다)을 둔다.

제 4 조 (관할) 청소리옴부즈만의 관할은 집행기관 및 그 소속직원이 직무상 처리한 행정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청소리옴부즈만의 관할로 하지 않는다.

1. 판결, 재결등에 의해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도의회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규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직원의 자기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인사행정행위도 포함한다)

6. 청소리 옴부즈만의 행위에 관한 사항

7. 청소리 옴부즈만이 고충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5 조 (청소리 옴부즈만의 직무) 청소리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도정에 관한 고충의 신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 일

2. 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위등에 관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일

3. 청소리 옴부즈만의 발의에 의거 사안을 채택하여 조사하는 일

4. 집행기관으로 부터 시정조치 등의 결과를 보고 받는 일

5. 도정의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6.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을 공표하는 일

제 2 장 책 무 등

제 6 조 (청소리 옴부즈만의 책무) 청소리옴부즈만의 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리 옴부즈만은 도민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공명정대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소리 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정당 또는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 청소리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그 직을 물러 난 후에도 같다.

제 7 조 (도민의 의무) 도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제도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에 협력 한다.

제 8 조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청소리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다하며, 그 독립성을 존중 한다.

제 3 장 청소리옴부즈만의구성

제 9 조 (청소리 옴부즈만의 구성) ① 청소리 옴부즈만은 대표1인을 포함하여 3인내외로 구성하고 그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② 청소리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뛰어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 검사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3. 4급이상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거나 근무한경력이있는자.
4. 기타 사회적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있는자로서 주요 사회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는 청소리 옴부즈만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청소리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청소리옴부즈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 상임 청소리 옴부즈만은 집행기관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 10 조 (대표 청소리 옴부즈만의 직무) ① 대표 청소리 옴부즈만은 청소리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청소리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대표 청소리 옴부즈만의 유고시 상임청소리 옴부즈만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 11 조 (해촉) 도지사는 청소리 옴부즈만이 심신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기타 청소리 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않은 비행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제 12 조 (겸직금지) ① 청소리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정치단체의 임·직원(정당의 당원을 포함한다)

3. 집행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또는 기타단체의 임·직원.

제 13 조 (회의) ① 청소리 옴부즈만의 회의는 대표 옴부즈만이 소집하여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청소리옴부즈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 조 (청소리 옴부즈만의 제척) 청소리 옴부즈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그 직무에 관하여 제척하며 다른 청소리 옴부즈만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케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사안의 신청인과 8촌이내의 친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할 경우
4. 위원이 당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안건에 대하여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제 15 조 (전문위원등) ① 청소리 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급내지 6급으로한 3인의 전문위원을 두고, 이중 간사는 대표청소리옴부즈만이 임명한다.

② 청소리옴부즈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공무원은 7급내지 8급공무원으로 6명, 보조요원 (기능직) 3명으로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 4 장 고충의처리등

제 16 조 (고충의 신청) 누구든지 집행기관에 관한 업무 및 그 직원의 직무에 관한행위에 관하여 이해에 관계되는 고충을 청소리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 17 조 (고충의 신청절차 및 신청철회) ① 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리 옴부즈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재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한다. 다만, 서면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고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 및 기타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고충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연월일.
3. 소송 및 다른 법령상의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및 당해 고충이 제4조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해당 여부.
4. 기타 본 조례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 고충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청소리 옴부즈만의 의견표명이 있기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8 조 (고충의 조사) ① 청소리 옴부즈만은 고충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사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 할때
2. 신청인이 고충신청의 원인이된 사실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아니 할때
3. 고충의 내용이 당해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다만,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청소리 옴부즈만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허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청소리옴부즈만은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고충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의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등) ① 청소리 옴부즈만은 신청된 고충 또는 청소리 옴부즈만에 의하여 채택한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② 청소리 옴부즈만은 고충의 조사를 개시한 후 그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 청소리 옴부즈만은 고충의 조사를 중지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취지의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한다.

제 20 조 (조사의 방법) ① 청소리 옴부즈만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관계되는 집행기관 및 그 소속직원이 보유한 당해고충에 관련되는 문서,기록,자료등을 열람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실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케할 수 있다.

② 청소리 옴부즈만은 고충의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청소리 옴부즈만은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와 감정·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청소리 옴부즈만의 요구와 조사등에 관하여 집행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 청소리옴부즈만은 제16조의규정에 의한 고충의 조사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기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적절한 시정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청소리옴부즈만은 고충의 원인이 집행기관에 기인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집행기관에 대해 당해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청소리옴부즈만은 제1항및제2항의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전에 당해 집행기관 및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의 진술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2 조 (조치결과의 통보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리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청소리 옴부즈만에 통보 한다.

② 청소리 옴부즈만은 신청된 고충에 관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나 의견을 표명한 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고충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 한다.

제 23 조 (고충신청인에 대한 통지) 청소리 옴부즈만은 신청된 고충의 조사결과에 관하여 신속히 통지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24 조 (공표) ① 청소리 옴부즈만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의견표명과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내용을 공표한다.

② 청소리 옴부즈만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권고, 의견표명 및 통보의 내용을 공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등의 보호에 관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25 조 (운영상황의 보고) 청소리옴부즈만은 매년 이 조례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한다.

제 26 조 (급여지급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 청소리 옴부즈만 및 청소리 옴부즈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조사. 감정과 분석인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여, 수당,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사무운영) 이 조례의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30일이내에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지방자치법

○ 제 107 조 (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42조(자문기관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받아야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